

# 수입금지품(식물병해충) 수입 허가 제도

---

2018. 9. 1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농업사무관 고 권 위)



# 목 차

- I** 식물검역 소개
- II** 수입금지품 수입 허가 제도
- III** 금지품 수입 절차
- IV** 금지품 수입 허용 평가



# 식물검역 소개

---



# 식물검역의 정의

---

## ● 식물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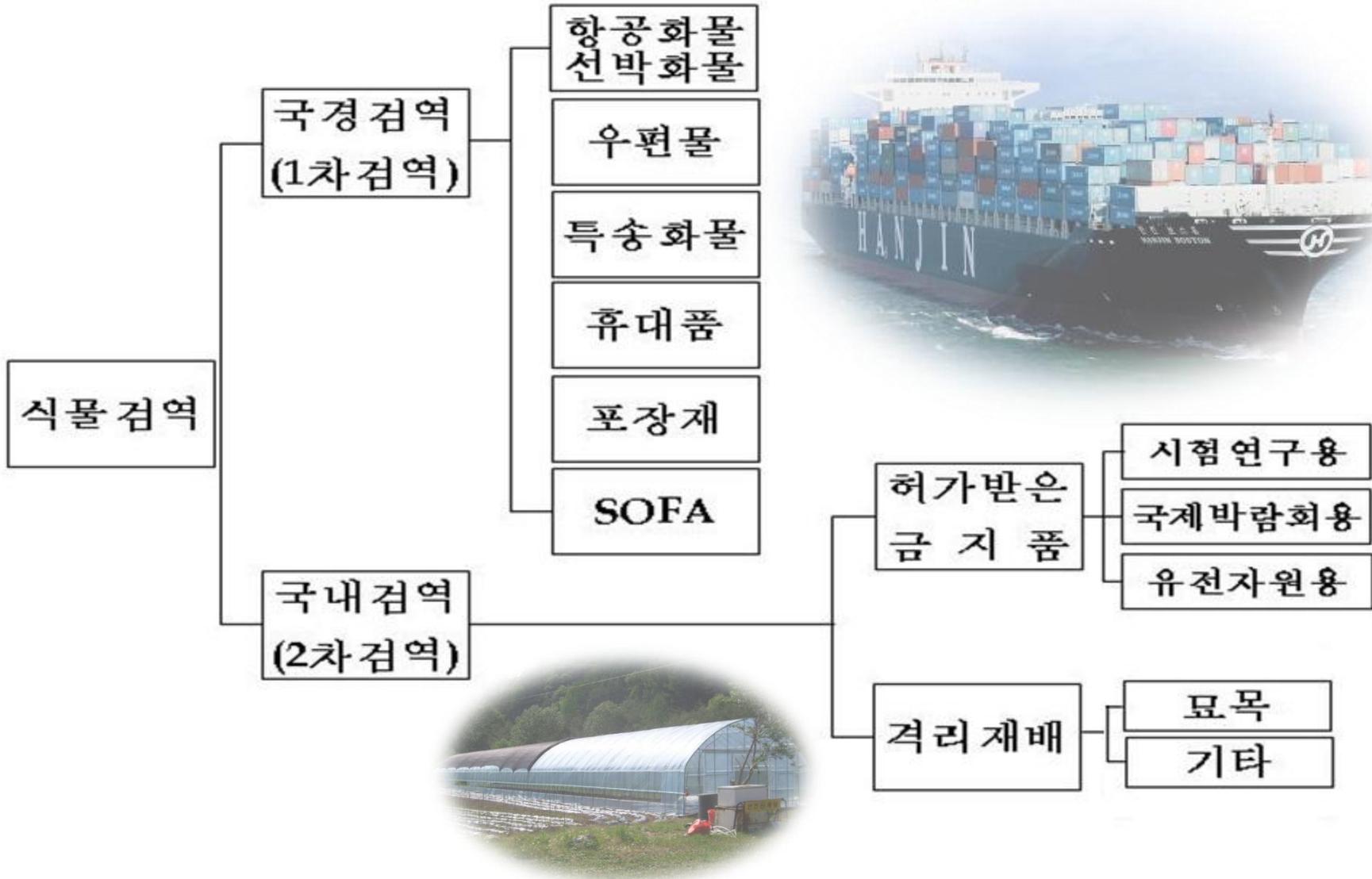
- 수출·수입 식물과 국내 식물에 **병해충 부착·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합격, 소독, 폐기·반송 조치**하는 것

## ● 식물검역대상물품

- **식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일반화물의 **목재포장재**



# 식물검역의 구분



# 식물방역법상 병해충 분류

- **비검역병해충** : 국내에 분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병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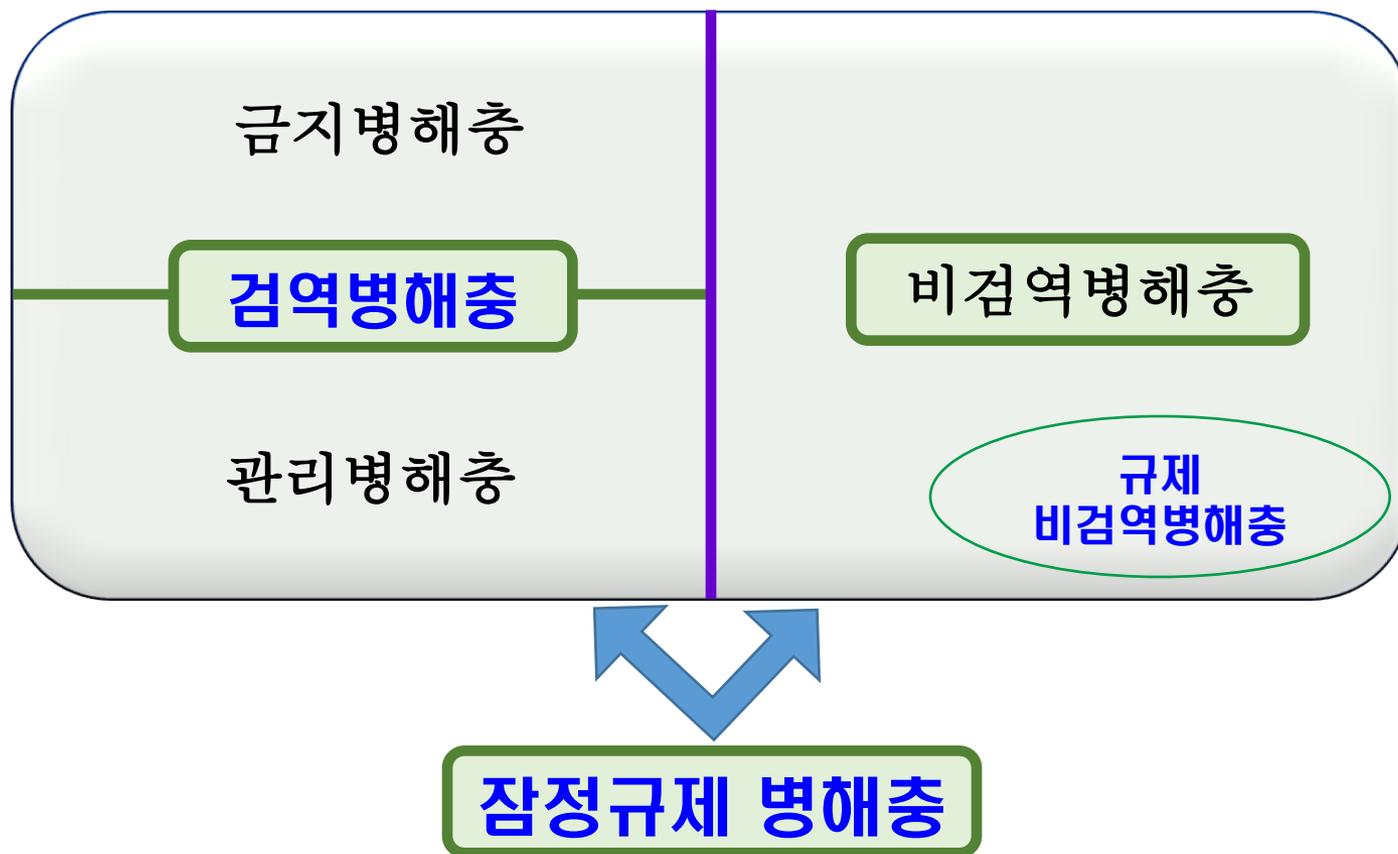
- **검역병해충**

-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

- **잠정규제병해충**

-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검역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 식물방역법상 병해충 분류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 잠정규제병해충 + 규제비검역병해충

# 금지병해충

## ● 금지해충(62종)

- 소나무재선충, 코드린나방, 벼줄기선충, 지중해과실파리, 헤시안파리, 개미바구미, 감귤뿌리썩이선충, 벼줄기선충 등

## ● 금지병원균(13종)

- 감자갈썩병, 배화상병, 벼이삭미이라병, 감자암종병, 담배노균병, 사과빛자루병, 자두곰보병, 감귤그린병, 포도황화병, 포도피어슨병, 소나무종유석병, 참나무역병, 제브라칩병

# 관리병해충

## ◆ 관리병해충 [1,98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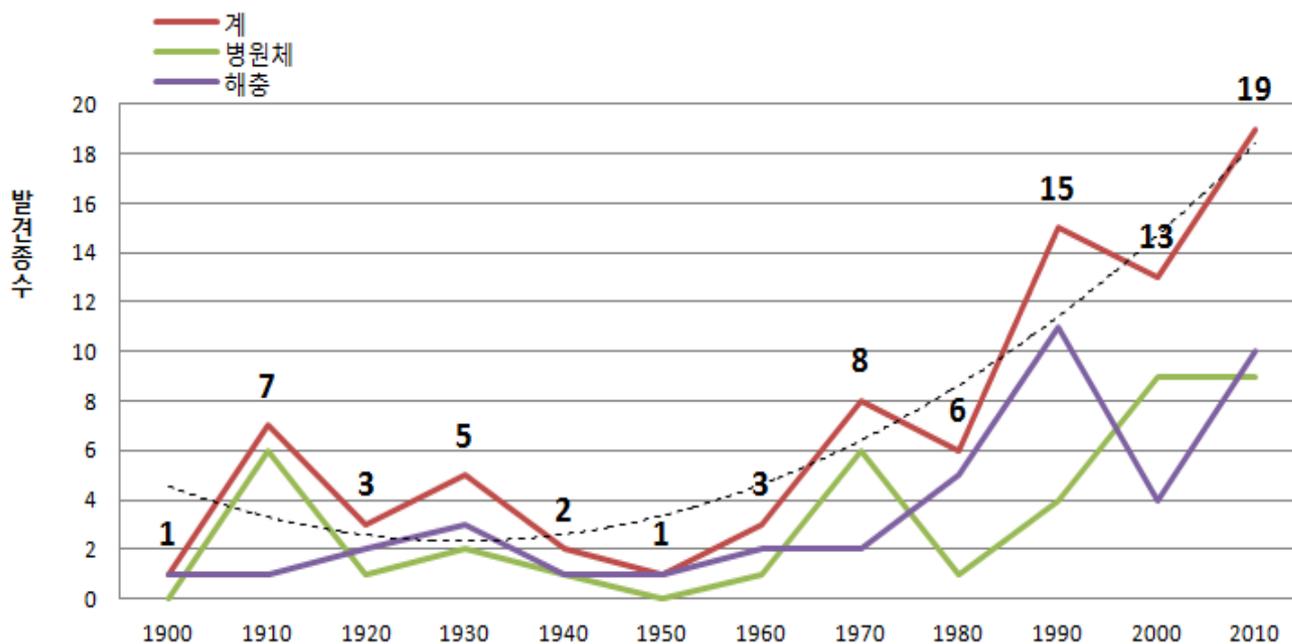
### ● 병원균 449종, 해충 1,518종, 잡초 20종

- 관리병 : 참나무시들음병(*Raffaelea quercivora*) 등 449종
- 관리해충 : 장미등근흡바구미(*Pantomorus cervinus*) 등 1,518종
- 관리잡초 : 캐나다엉겅퀴(*Cirsium arvense*) 등 20종

# 병해충 유입현황

- 기후온난화 및 이상기온, 국제교역량의 증가, 여건변화 등 외래·돌발병해충 발생빈도 증가

\* 1900년 이래 89종(병원균 42, 해충 47) 유입, 이 중 34종이 2000년 이후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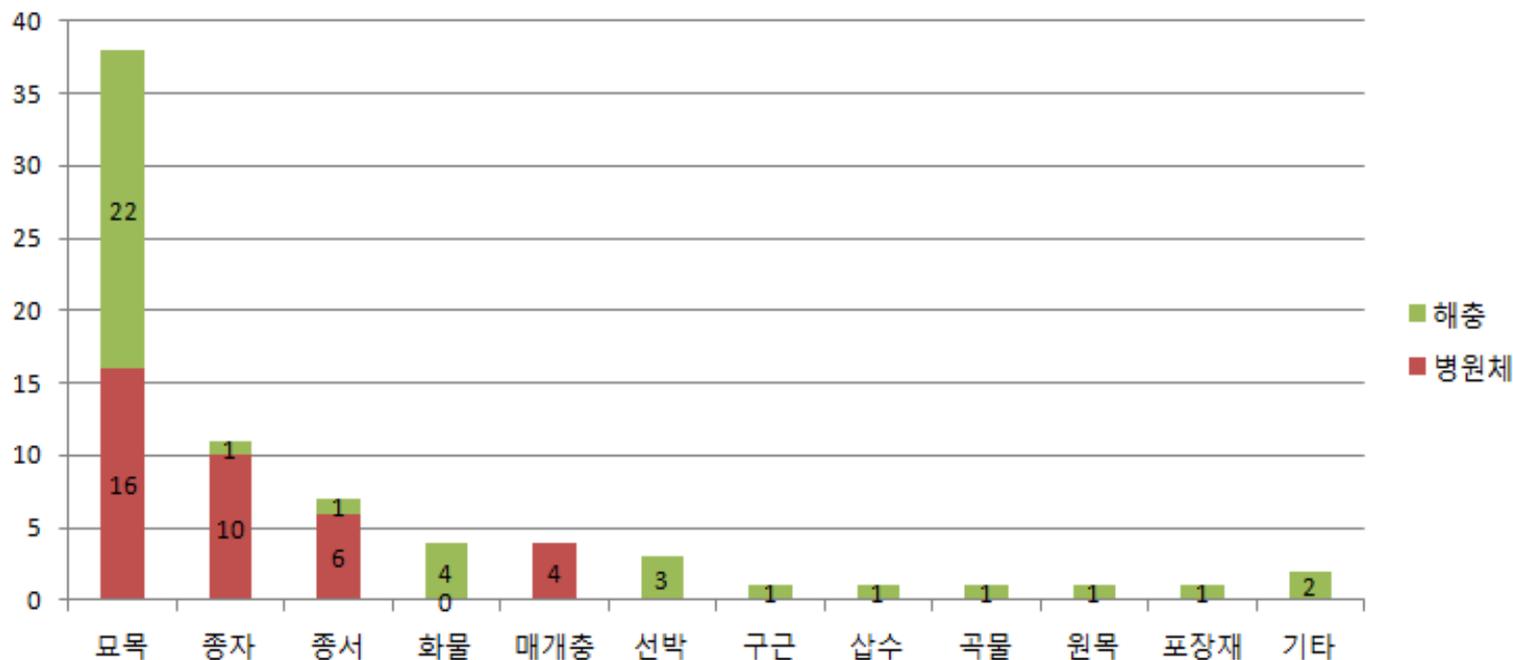


# 외래병해충의 유입

○ 외래병해충은 묘목·종자를 통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음

- 경로가 밝혀진 74종 중 묘목을 통해 38종(51%)이 유입

\* 종자(15%) 및 종서(9%)는 병원체가 주로 유입되는 경로임



#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 소나무재선충 방제

- 1988년 유입 2016년까지 방제비용으로 8,000억 소요

- 과수화상병 방제

- 2015. 5. 6. 최초 발생신고로 140ha 폐원조치

(폐원 비용 약 117억)

- 이후 매년 발생신고 되고 있음

소나무 재선충



배화상병



# 배화상병 병징

신초



잎



열매



줄기





# 수입금지품 수입허가제도



# 관련 규정

## 식물방역법 제10조 (수입 금지 등)

### 제1항. 수입금지품

- 금지병해충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식물
- **병해충**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금지물품의 용기·포장

### 제2항. 수입금지품 중 수입을 허용하는 물품

- **시험연구용**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국제박람회용 (정부가 인정, 1개국이상 참여)
- 농업유전자원용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수출용 (금지종자,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 포장·가공 수출

조건)

# 관련 규정

##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1. **시험연구용** :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제2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제7호는 제외)

**유전자원확보용**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일 것**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략)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금지품수입 제외)**

3. ~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나노기술 연구협의회,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1인 창조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금지품수입 제외)**

제 2002 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건설(주)연구소  
[소속기업명: 건설(주)]

2.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3. 신고 연월일: 2013년 8월 14일  
(최초인정일: 2002년 3월 14일)

\* 변경내역: 소재지 변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2013년 8월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참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 기초연구사업의 ---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호 서식)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 **확인 자료**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 계획서**
- 국제박람회용 : 전시 및 안전관리 계획서
- 농업유전자원 확보용 :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재수출용 :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 공정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lt;개정 2013.3.23&gt;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보내는 사람	성명				
	주소				
받는 사람	성명	기관장			
	생년월일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팩스번호:		
품목명		학명			
수량		수송방법			
채취국가(산지)		경유국가 및 지역			
수입목적		포장상태 및 개수			
발송예정일		수입예정일			
수입후관리장소		수입국가			
수입후관리방법		이용기간			
이용후처리방법					
<p>「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신청기관의 장)</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p>					
첨부서류	1.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1부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비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심사	허가증명서 발급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 1. 금지품의 **연구관리 전문인력 현황**

성명	직위 (직급)	학위 (전공)	연구경력	연구담당업무 (관리책임자)

○ 금지품 취급자 :

○ 관리책임자 :

### 2. 금지품의 **관리시험연구 시설 현황**

가. 시설의 종류

시설명 (건물동 호수)	규 모 (m <sup>2</sup> )	용도

※ 각 시설의 배치도

나. 시설의 안전설비

○ 환기시설 :

○ 출입문 :

○ 출입통제 :

○ 이중방충망 :

### 3. 금지품의 **시험연구 장비 현황**

가. 시험연구 장비 및 도구

장비명	수량	용도	설치장소(동,호)

나. 장비 및 도구의 안전사용

○

#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 1. 시험연구 계획서

### 가. 시험연구과제

- 제목 :
- 시험연구계획 수립 완료일 :
- 연구책임자 :
- 연구 목적 :
- 연구 배경 :
- 시험재료 및 방법:
- 결과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 2. 안전관리계획서

### 가. 수입 시 안전관리 등의 조치

- 금지품(식물)의 수입 요건 :
- 수출국에서의 물품 포장 :
  - 금지품 포장의 수취인 주소 :

### 나. 수입된 금지품의 시험 전 안전관리방안

- 금지품 도착시 신고 :
- 금지식물의 보관방법 :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식물의 재배 및 시험준비
  - 재배용기 및 수량 :

### 다. 시험 중 안전관리방안

- 출입자 통제 :
- 재배식물의 관리 :
- 변동상황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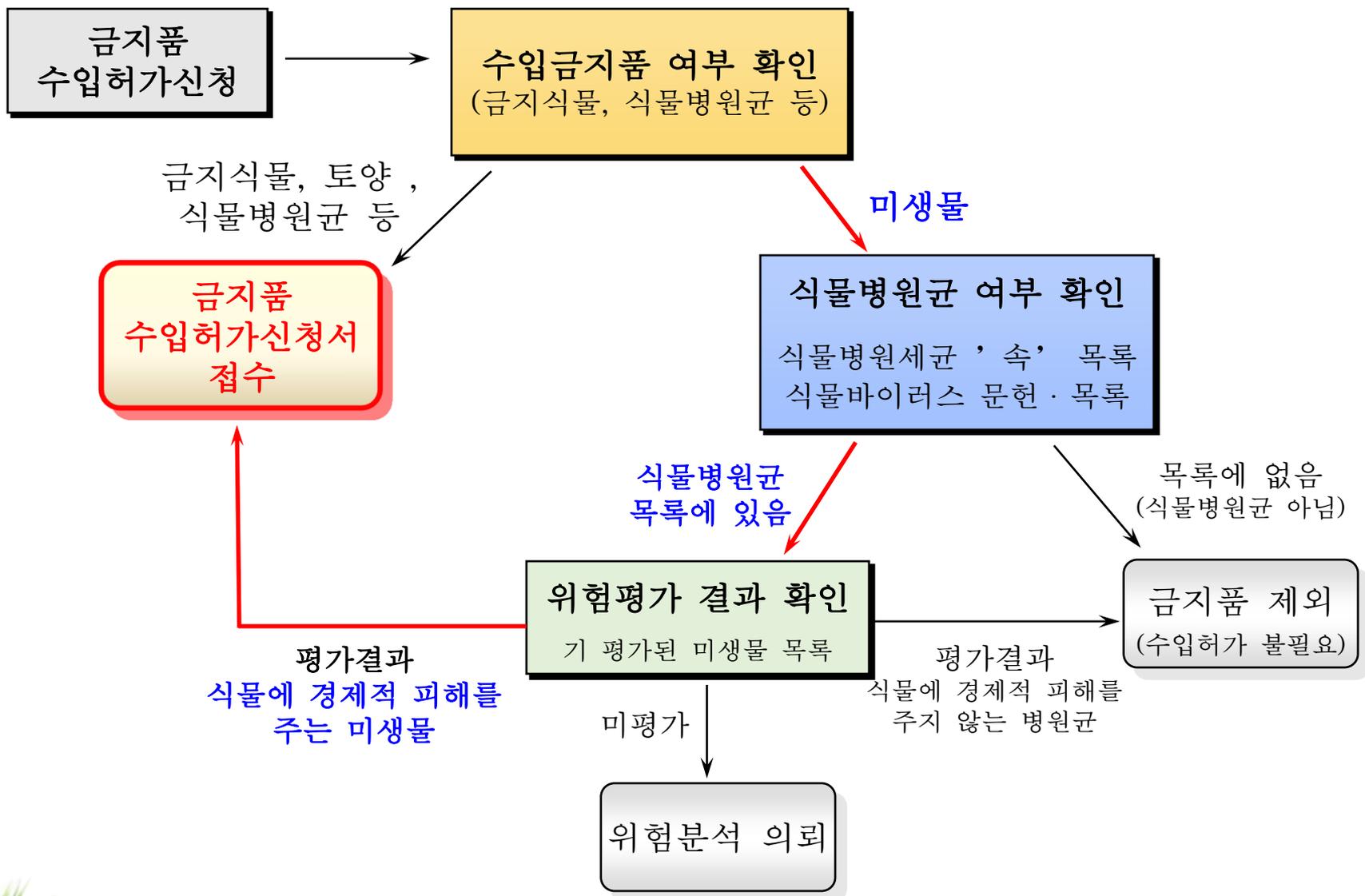


# 금지품 수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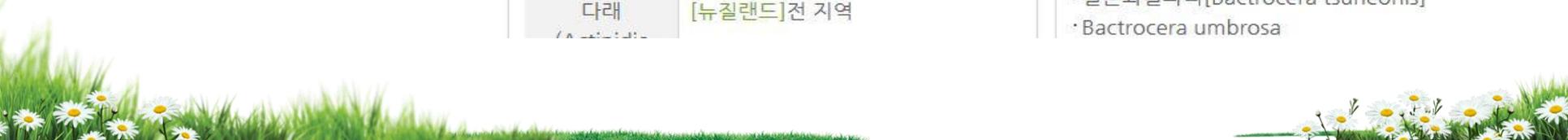


# 수입허가신청서 접수



## 수입금지식물, 지역, 병해충 |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긴급수입제한조치	금지병해충										
금지식물	금지지역	주요관심병해충												
1. 벼·왕겨·벼짚과 그 가공 품 (껍질을 벗긴 쌀과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 낻는 제외한다.)	세계 전 지역 (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줄기선충 [Ditylenchus angustus]</li> <li>·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li> </ul>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파인애플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p>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별</th> <th>수입허용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감</td> <td>[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td> </tr> <tr> <td>포도</td> <td>[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td> </tr> <tr> <td>참다래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adelicosa)</td> <td>[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td> </tr> <tr> <td>다래 (Actinidia chinensis)</td> <td>[뉴질랜드] 전 지역</td> </tr> </tbody> </table>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참다래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adelicosa)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다래 (Actinidia chinensis)	[뉴질랜드] 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li> <li>· Ceratitis quinaria</li> <li>· Ceratitis rosa</li> <li>· Bactrocera aquilonis</li> <li>· Bactrocera carambolae</li> <li>· Bactrocera correcta</li> <li>· 오리엔탈과실파리류[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li> <li>· Bactrocera halfordiae</li> <li>· Bactrocera jarvisi</li> <li>· Bactrocera latifrons</li> <li>· Bactrocera neohumeralis</li> <li>· Bactrocera papayae</li> <li>· Bactrocera tau</li> <li>· Bactrocera trivialis</li> <li>· 퀴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li> <li>· Bactrocera tuberculata</li> <li>· 오이과실파리[Bactrocera cucurbitae]</li> <li>· 일본과실파리[Bactrocera tsuneonis]</li> <li>· Bactrocera umbrosa</li> </ul>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참다래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adelicosa)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다래 (Actinidia chinensis)	[뉴질랜드] 전 지역													



<p>3. 호두나무의 열매[탈각(脫殼)된 것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시아</b>: 레바논 · 미얀마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인도 · 중국 · 터키 · 파키스탄</li> <li>· <b>유럽</b>: 전 지역</li> <li>· <b>아프리카</b>: 전 지역</li> <li>· <b>북아메리카</b>: 캐나다·미국 · 멕시코</li> <li>· <b>남아메리카</b>: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 · 콜롬비아·페루</li> <li>· <b>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b>: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li> <li>· <b>러시아·우크라이나 · 투르크메니스탄 · 벨라루시 · 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즈스탄 · 그루지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 라트비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li> </ul>
<p>4. 감자 · 토마토 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시아</b>: 아프가니스탄 · 중국(허베이(河北) · 헤이룽장(黑龍江) · 장쑤(江蘇)·칭하이(青海)성만 해당한다) · 인도(히말차르프라데시 · 마하라슈트라 지역만 해당한다)</li> <li>· <b>유럽</b>: 벨라루시 · 독일 · 폴란드 · 러시아 · 영국(잉글랜드 · 웨일즈 지역만 해당한다)</li> <li>· <b>아프리카</b>: 이집트 · 나이지리아</li> <li>· <b>북아메리카</b>: 미국(캔사스·메인·메릴랜드 · 미시건 · 미네소타 · 미시시피 · 네브래스카·뉴햄프셔 · 뉴욕 · 노스다코타·오하이오 · 위스콘신 · 와이오밍주만 해당한다)</li> <li>· <b>중앙아메리카</b>: 코스타리카</li> <li>· <b>남아메리카</b>: 아르헨티나·칠레·페루·베네수엘라</li> <li>· <b>오세아니아</b>: 뉴질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자갈축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li> </ul>
<p>5. 고구마속식물·나팔꽃속식물 ·메꽃속식물·마속식물·새삼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시아</b>: 라오스 ·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 베트남 · 브루나이 · 미얀마 · 싱가포르·스리랑카 · 인도네시아·인도·중국·대만·캄보디아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 일본(북위 30°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만 해당한다) · 몰디브 · 코코스섬 · 크리스마스섬 · 페스카도레스제도 ·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미바구미[Cylas formicarius]</li> <li>· 고구마바구미[Euscepes postfasciatus]</li> </ul>

이하 생략



## 〈미생물배양체 위험평가 신청관련 공지사항〉

2012년 1월 15일부로 미생물배양체 위험평가와 관련된 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4호)이 제정됨에 따라, 미생물배양체의 위험평가 신청은 동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관련자료(신청서의 첨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별지 제1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전자민원/민원서식자료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신청서"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관련사항 문의 : 054-912-0642).

## 위험평가된 미생물배양체 목록 (2018. 4. 9. 현재)

학 명	평가결과	근 거	비고
Achromobacter xylosoxidans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1517('14.5.1)	
Acidaminococcus fermentans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1517('14.5.1)	
Acidovorax anthurii	식물병원균(수입금지품)	위험평가과-782('16.3.23)	
Acidovorax wautersii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747('15.3.13)	
Acinetobacter spp.(속 전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평가과-1278('07.5.28)	
Acremonium charticola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평가51192-201('03.3.31)	
Actinetobacter baumani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평가민)51070-127('03.2.28)	
Actinoallomurus amamiensis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857('14.3.5)	
Actinoallomurus caesius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857('14.3.5)	
Actinoallomurus coprocola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857('14.3.5)	
Actinoallomurus fulvus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지않는 미생물	위험관리과-857('14.3.5)	

이하 생략

# 참고: 식물병원세균 ‘속’ 목록(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odospirillales	Acetobacteraceae	Acetobacter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Comamonadaceae	Acidovorax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Agrobacterium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Alkalicoccus
Proteobacteria	Alpha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Allorhizobium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Alteribacillus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Lachnospiraceae	Anaerocolumn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coccaceae	Arthrobacter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Bacillus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Bradyrhizobiaceae	Bradyrhizobium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Brenneria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urkholderiaceae	Burkholderia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urkholderiaceae	Caballeronia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Candidatus Liberi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Candidatus phlomobacter
Tenericutes	Mollicutes	Acholeplasmatales	Acholeplasmataceae	Candidatus phytoplasm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bacteriaceae	Clavibacter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Clostridi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Corynebacterineae	Corynebacteri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bacteriaceae	Curtobacterium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Dickey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Entero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Erwini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Ewingella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Faecalicaten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Gibbsiella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odospirillales	Acetobacteraceae	Gluconobacter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Glutamicibacter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Gottschalki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Haematomicrobium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Hathewayia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Oxalobacteraceae	Herbaspirill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Intrasporangiaceae	Janibacter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Oxalobacteraceae	Janthinobacterium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Klebsiell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Kosakoni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bacteriaceae	Leifsoni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Lonsdalea

# 참고: 식물병원세균 ‘속’ 목록(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Maledivi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Metakosakoni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bacteriaceae	Microterricola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Neorhizobi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Nocardiaceae	Nocardia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Oxalobacteraceae	Noviherbaspirill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Paenarthrobacter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Paeniglutami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Pantoea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urkholderiaceae	Paraburkholderia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Peptostreptococcaceae	Paraclostridium
Firmicutes	Clostridia	Clostridiales	Clostridiaceae	Paramaledivibacter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Pararhizobium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Pectobacterium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Pseudoarthro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Pseudomonadales	Pseudomonadaceae	Pseudomonas
Proteobacteria	Beta 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Ralstoniaceae	Ralstoni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Microbacteriaceae	Rathayibacter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Pseudomonadales	Pseudomonadaceae	Rhizobacter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Rhizobiales	Rhizobiaceae	Rhizobium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Sphingomonadales	Sphingomonadaceae	Rhizorhabdus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Sphingomonadales	Sphingomonadaceae	Rhizorhapis(Rhizomonas)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Nocardiaceae	Rhodococcus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Salibacterium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Salipaludibacillus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Salisediminibacterium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Salmonell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Samsoni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Serratia
Firmicutes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Solibacillus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Sphingomonadales	Sphingomonadaceae	Sphingobium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Sphingomonadales	Sphingomonadaceae	Sphingomonas
Proteobacteria	Alpha proteobacteria	Sphingomonadales	Sphingomonadaceae	Sphingopyxis
Tenericutes	Mollicutes	Entomoplasmatales	Spiroplasmataceae	Spiroplasm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Xanthomonadales	Xanthomonadaceae	Stenotrophomonas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mycetales	Streptomycetaceae	Streptomyces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Enterobacteriales	Enterobacteriaceae	Tatumell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Xanthomonadales	Xanthomonadaceae	Xanthomonas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Xanthomonadales	Xanthomonadaceae	Xylella
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	Xanthomonadales	Xanthomonadaceae	Xylophilus

## - ICTV 2014 Master Species List에 기주를 표시

Order	Family	Subfamily	Genus	Species	Host
Picornavirales	Picornaviridae		Aalivirus	Aalivirus A	동물
Unassigned	Nanoviridae		Babuvirus	Abaca bunchy top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Geminiviridae		Begomovirus	Abutilon golden mosaic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Geminiviridae		Begomovirus	Abutilon mosaic Bolivia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Geminiviridae		Begomovirus	Abutilon mosaic Brazil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Geminiviridae		Begomovirus	Abutilon mosaic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Closteroviridae		Crinivirus	Abutilon yellows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Unassigned	Mimiviridae		Mimivirus	Acanthamoeba polyphaga mimivirus	동물
Unassigned	Phycodnaviridae		Chlorovirus	Acanthocystis turfacea chlorella virus 1	동물
Bunyvirales	Peribunyaviridae		Orthobunyavirus	Acara orthobunyavirus	동물
Unassigned	Polyomaviridae		Alphapolyomavirus	Acerodon celebensis polyomavirus 1	동물
Unassigned	Polyomaviridae		Betapolyomavirus	Acerodon celebensis polyomavirus 2	동물
Mononegavirales	Paramyxoviridae		Rubulavirus	Achimota rubulavirus 1	동물
Mononegavirales	Paramyxoviridae		Rubulavirus	Achimota rubulavirus 2	동물
Unassigned	Plasmaviridae		Plasmavirus	Acholeplasma virus L2	세균
Unassigned	Inoviridae		Plectrovirus	Acholeplasma virus L51	세균
Caudovirales	Siphoviridae		Jwxvirus	Achromobacter virus 83-24	세균
Caudovirales	Podoviridae		Jwalphavirus	Achromobacter virus Axp3	세균
Caudovirales	Podoviridae		Jwalphavirus	Achromobacter virus JWAlpha	세균
Caudovirales	Siphoviridae		Jwxvirus	Achromobacter virus JWX	세균
Unassigned	Ampullaviridae		Ampullavirus	Acidianus bottle-shaped virus	식물(곰팡이 포함)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Gamm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1	동물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Delt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2	동물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Bet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3	동물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Bet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6	동물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Bet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7	동물
Ligamenvirales	Lipothrixviridae		Betalipothrixvirus	Acidianus filamentous virus 8	동물

이하 생략

# 생물작용제로 지정된 식물병원균

## ● 식물병원균 중 생물작용제로 지정된 병원균 : 13종

- 금지병원균(1종) : 감자갈죽병바이러스
- 국내 분포 병원균(8종) : 감귤궤양병원균, 벼흰잎마름병원균, 감자둘레썩음병원균, 풋마름병원균, 깨씨무늬병원균, 줄기녹병원균, 줄녹병원균, 도열병원균
- 국내 미분포 병원균(4종) : 감자구균, 구름무늬병원균, 커피탄저병원균, *Mycrocyclus ulei*

## ● 생화학무기법 제12조(수입규제) 제1항, 제6항

- 생물작용제를 수입할 경우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금지품 수입허가절차 (수입 전)

구분	주 체	내 용	대 상
수 입 전	수 입 자	수입허가신청서 제출(전자팩스우편)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식물방제과	수입허가신청서 검토 (적 합 시)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의뢰 (부적합시) 수입불허 통보	관할 검역기관 수입자
	관리장소 관할 검역 기관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인력·시설·장비 등) .....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결과 보고	수입자 ..... 식물방제과
	식물방제과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결과 검토 (적 합 시) 금지품 수입허가서 발급 (부적합시) 수입불허 통보	수입자

# 금지품 관리 인력 기준

- **시험연구용** :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고 관리가 가능한 인력**
- **국제박람회용** : 수입되는 물품의 생리·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관리가 가능한 인력
- **농업유전자원용** : 관련 기관에서 1년이상 업무를 담당한 인력
- **재수출용** : 수입자는 종자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이고, 금지품 관리 전문인력

# 금지품 관리 시설(장소) 기준

-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시설)**
-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이 방지되는 시설**
- 타 물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되는 장소(시설)**
- **잠금장치**가 설치된 시설(장비)
- 금지품을 **파종 또는 재식하는 장소**는 다음의 조건 구비
  - 외부와 격리된 건물 또는 온실
  - 시설의 바닥은 포장되어 잡초가 자랄 수 없어야 함
  - 재배상이 설치되어 재배상 위에서 식재관리
  - 출입구는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구조
  - 환기구 또는 환기창에 0.5×0.5mm 이하의 방충망 설치

# 금지품 관리 장비 기준

- 병해충 **살균·살충 장비(가압멸균기 등)** 구비
- **잠금장치가 있는 병해충 보관 장비(캐비닛 등)** 구비
- 안전시험대(clean bench 등) 구비
- 실험 시 교차오염 방지장비 구비



# 금지품 허가 조건

- 수입 시 금지품 포장물 겉표면에 **봉인스티커를 부착** 해야 함
- 화물 · 우편 · 특송 수입 시 **수취인 주소를 검역기관 주소로** 하여야 함
- 수입 후 관리기간 중 **‘안전관리계획서’** 에 따라 관리하고,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금지품 이용기간 만료 시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폐기(소각)** 하여야 함

# 금지품 포장용기 봉인스티커

식물검역관의 허락없이 개봉금지

수입허가용

**DON'T OPEN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PLANT QUARANTINE OFFICER**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봉인스티커 부착(우편물)



# 금지품 수입허가절차 (수입 후)

구분	주 체	내 용	대상
수입 후	수 입 자	금지품 수입신고(검역신청서 제출)	수입지 검역기관
	수입지 관할 검역기관	금지품에 대한 수입검역 (적합시) 금지품 관리기관 (부적합시) 폐기반송	관할 검역기관 수입자
	수 입 자	금지품 도착신고 ※ 식물검역관의 허락없이 개봉금지	관할 검역기관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	도착점검 및 관리중 중간점검(반기별 1회)	금지품 관리장소
	수 입 자	시험종료 통보	관할 검역기관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	최종점검 및 금지품(잔재물) 폐기확인 >>> 관리종료 ※ 폐기방법 : 소각(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반송 (검역안전성 확보 위해 고압멸균 후 폐기)	금지품 관리장소

# 수입신고 및 검역

- 수입자는 수입허가 금지품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검역신청**
- **검역관 수입검역(확인) 사항**
  - 수입허가증명서(사본) 첨부 여부
  - 금지품 개봉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 **수입허가품목** 일치 여부
  - 수입허가 수량 초과 여부
  - 수입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
- **실험실에서 실시, 운반이 어려운 경우 보세구역에서 실시**
  - ❖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개봉 시 손상이 우려될 경우  
개봉하지 아니하고 수량 확인만으로 수입검역에 갈음할 수 있음

# 검역 부적합 시 처분 상황

## ● 폐기 또는 반송처분 사항

- 수입허가증명서(사본) 미첨부
- 금지품 개봉 금지 스티커 미부착
- 수입허가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
- 수량을 초과한 경우 허가수량 초과량에 대해서만 폐기
- 관리장소 도착신고 지연(관리책임자 등이 도착 즉시 신고)
- 검역관이 금지품 도착 확인 시 스티커가 훼손된 경우
- 허가된 것 외 규제병해충 부착(소독가능 할 경우 소독처리)

# 금지품 이동(Safety box에 봉인스티커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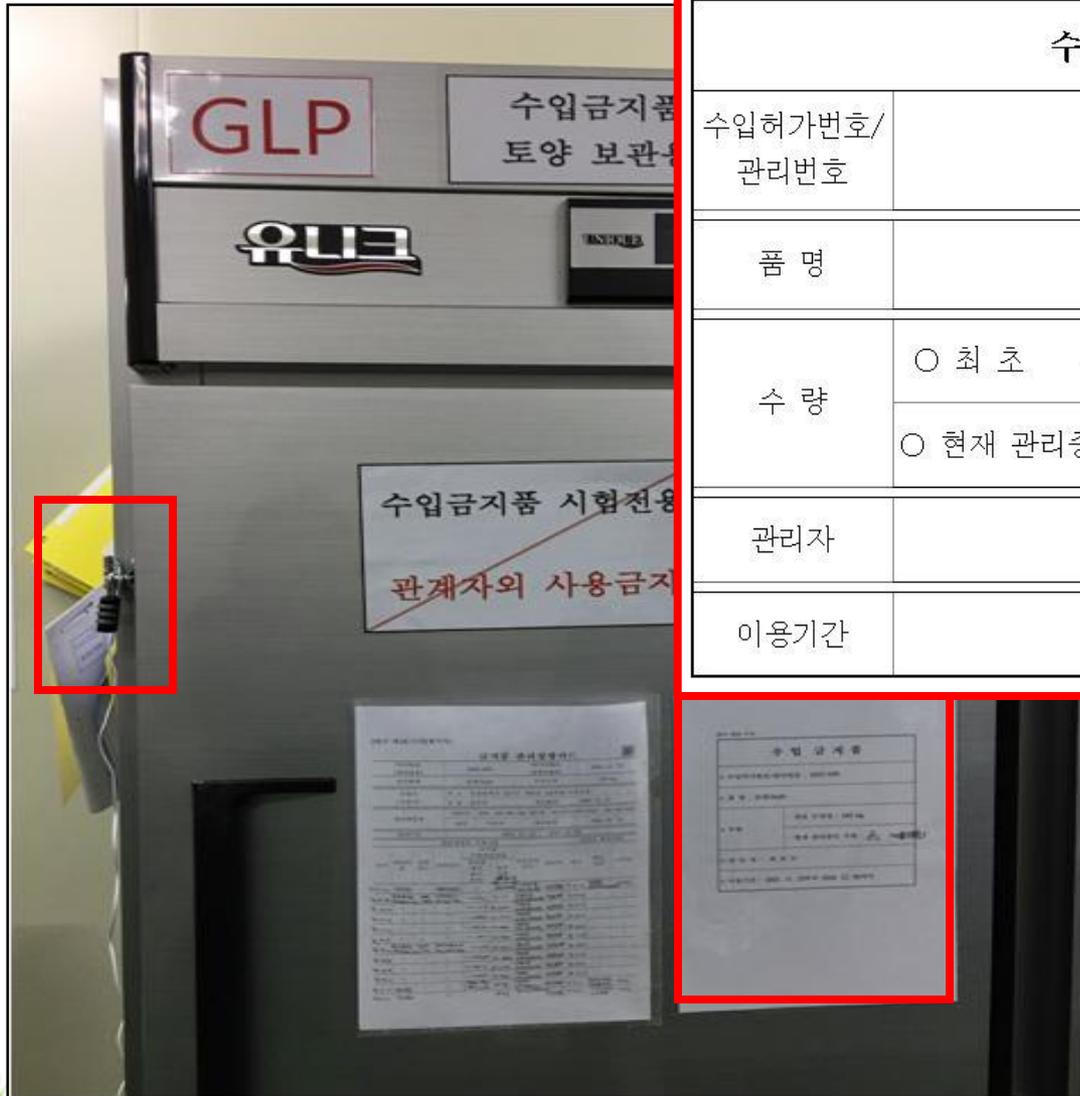


# 수입 후 관리방법

## ● 금지품 수입 후 관리방법

- 허가받은 **건별로 각 각 분리(격리)하여 밀봉 보관**
- **잠금장치**된 보관장에 **금지품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
- **금지품관리상황카드 작성·비치**
- 보관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
- 금지품 이전 시, 관할기관 또는 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위적인 증식 또는 일부 폐기 시** 관리기관에 **사전에 통지·입회**
- 관리종료 시 **검역관 입회하에 살균·살충하여 폐기**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 금지품 이용기간을 연장은 만료 1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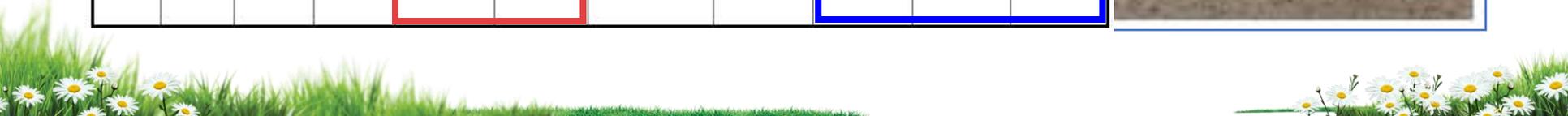
# 수입금지품 관리(잠금장치, 표지판 부착)



수 입 금 지 품	
수입허가번호/ 관리번호	
품 명	
수 량	○ 최초 수 입 량 :
	○ 현재 관리중인 수량 :
관리자	
이용기간	

# 수입금지품 관리(관리상황카드 작성 · 비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허가번호 (관리번호)				허가년월일 (등록년월일)						
금지품명				수입수량						
수입자 (이용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FAX :		
		성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						
관리책임자 기재사항							검역관 확인사항			
일자	관리내용	실험장소	보관장소	금지품 수량변동내역		안전관리 조치	관리자	일자	확인 내용	검역관
				증감량 (증식, 폐기, 분양)	현재 수량					



# 수입금지품 관리(관계자 외 출입통제)



# 관리상황 점검

## ● 관리상황 점검

- 최초점검: 금지품 **도착확인**, 금지품 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 중간점검: **반기 1회** (장소변경, 인위적 증식, 일부 폐기하는 경우  
추가 점검)  
재수출용인 경우 수시점검
- 최종점검: 관리 **종료 시**(재수출용 금지종자 수출완료 시)

#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분양

- **분양가능 금지품 : 유전자원용 금지품**  
**[시험연구용은 불가]**
- **분양가능 기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 **분양대상 금지품 :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비검역, 잠정규제병해충)**
  - 외국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수입금지품

수입 허용 평가



# 수입금지품의 수입 허용 평가단계

1단계 : 접수

2단계 : 착수

3단계 : 예비 위험평가

4단계 : 개별 **병해충위험평가**

5단계 : **위험관리방안평가**

6단계 : **수입요건(수입금지 제외기준) 작성**

7단계 :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8단계 :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 담당부서 : 1~5단계 위험관리과, 6~8단계 수출지원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

감사합니다.

054-912-0665, 0664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